산업체위탁교육 규정

2014.5.9. 개정
1999.10.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학칙 제24조에 의하여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9.>

제2장 산업체의 범위

제2조(산업체의 범위)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3.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5.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7.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9.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4.5.9.>

제3장 교육형태 및 학사관리

제3조(위탁형태) 위탁교육의 기본 형태는 산업체의 인적 구성 규모에 따라 단독위탁과 연합위탁 2가지로 한다.

1. 단독위탁 : 산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학과별로 위탁
2. 연합위탁 : 둘 이상의 산업체가 연합하여 학과별로 위탁

제4조(학생 수 및 학급편성) ① 선발 학생 수는 교육부 모집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4.5.9.>
② 학급편성은 15명 이상의 별도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학급편성이 불가능할 경우는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정규과정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5조(설치학과) 설치학과는 본 대학에 기 설치된 기존학과에 한한다.

제6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은 본 대학과 위탁산업체가 협의하여 새로이 개발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때 개발된 교육과정은 본 대학에서 이미 개설된 학과 및 계열에

포함되는 과정으로 하고 유사과정도 본 대학의 여건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제7조(학사관리) ① <삭제 2007.12.1.>

② 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본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한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신분변동의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

③ 산업체위탁생은 휴학을 불허한다. 단, 위탁산업체 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산업체 장이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

④ 휴학 및 학점 미취득 등의 사유로 수업연한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한 자가 복학 또는 부족한 학점을 채우고자 하는 학기에 해당 위탁과정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과정의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9.>

제8조(위탁교육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①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위탁교육심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업체 임직원 및 대학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1/2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09.3.1.>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설학과에 관한 사항
2. 위탁의뢰 산업체 적부에 관한 건
3. 위탁생의 선발기준
4.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5. 위탁교육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학교와 산업체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선발기준 및 등록금 납부

제9조(자격 및 선발기준) ① 위탁생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로 한다.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특별학급, 야간고등학교 및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재학기간과 산업체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을 산업체 근무 기간으로 본다)

② 위탁생은 당해 산업체에서 추천하여 본 대학에서 별도로 정한 전형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위탁생은 본 대학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생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남학생도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① 교육비는 위탁산업체장의 책임 하에 본 대학 등록 납부기간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비는 해당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며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 요원 활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11조(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① 위탁교육 산업체와 본 대학의 산학협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촉진 및 참여
2. 산업체가 필요한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의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3.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4.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개발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5.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②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체내의 강의실 또는 실험 실습실이 제공되는 경우는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의 학급으로 강의 또는 실험실습 교육을 산업현장에서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업체 임직원 중 적격자를 본 대학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3.1.>

제12조(위탁교육 지원서류)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부 (본 대학 소정양식)
2. 사업체장의 추천서 1부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3조(위탁교육계약서) 위탁교육을 의뢰한 산업체의 장과 본 대학 총장간의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9.3.1.>

제14조(위탁교육의 실시 승인신청) <삭제 2002.3.1.>

제15조(시행세칙)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중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3.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